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23

발의연월일: 2021. 2. 22.

발 의 자:김민석·강병원·강득구

민병덕 • 박상혁 • 박성준

양정숙ㆍ이수진ㆍ이형석

진선미 • 진성준 • 최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·양육방법, 보호자의 역할,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"영유아의 인권"을 "아동학대 예방, 영유아의 인권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보호자 교육) ① 국가와	제9조의2(보호자 교육) ①
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	
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・양육방	
법, 보호자의 역할, <u>영유아의</u>	아동학대
<u>인권</u>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	예방, 영유아의 인권
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